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973
----------	-------

발의연월일 : 2026. 1. 12.

발 의 자 : 강명구 · 김태호 · 우재준
안철수 · 고동진 · 이종배
엄태영 · 김기현 · 권영진
김장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향상을 위하여 금융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온라인·비대면 금융거래가 확대되면서 디지털 금융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근로자의 금융접근성이 저하되어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한 피싱사기나 리딩방을 통한 투자사기 등 각종 금융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금융교육은 법적 의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금융사기 피해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예방 효과를 충분히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근로자가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급여를 받는 경우에 사전에 금융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하여 금융 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2조 및 제48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을 “제2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지급 전에 금융범죄 피해 예방 및 금융역량 향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⑦ 제2항 및 제6항의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제48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32조제6항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 전에 교육을 하지 아니한 사용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사용자의 책무) ① (생략)	제32조(사용자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u>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u>	② ----- ----- ----- ----- ----- -----, <후단 삭제>
③ 제2항에 따른 교육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 및 제6항----- ----- -----.
④ · ⑤ (생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u>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지급 전에 금융범죄 피해 예방 및 금융역량 향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u>
<신 설>	⑦ 제2항 및 제6항의 경우 사

제48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2. (생략) <u><신설></u> 3. ~ 5. (생략) ③ (생략)	<u>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u> 제48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2. (현행과 같음) <u>2의2. 제32조제6항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 전에 교육을 하지 아니한 사용자</u> 3. ~ 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	---